#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3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김남희·강준현·박희승

전진숙 · 서미화 · 복기왕

박지혜 • 백승아 • 김동아

고민정 • 박선원 • 이학영

이수진 • 박수현 • 박해철

신영대 · 노종면 · 민형배

정준호 · 강훈식 · 남인순

한정애・김 윤 의원

(239])

#### 제안이유

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 육비를 지원하는 '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'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 그 러나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,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, 국가 또는 양육비이 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 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·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 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.

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여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에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6조).
- 나.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(안 제13조).
- 다.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).
- 라.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 득·재산, 신용·보험·금융에 관한 정보를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 및 제17조).
- 마.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함(안 제21조의5).
- 바. 제3장의2를 신설하고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, 결정, 선지급의 중

- 지 및 회수, 선지급금 및 회수금 등 선지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1까지 신설).
- 사.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(안 제23조).
- 아.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, 출국금 지요청, 명단 공개 업무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24조).
- 자.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함(안 제27조)

#### 법률 제 호

##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.

- 5.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사항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4.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

제13조제1항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·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요청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비양육부・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
- 2.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

3.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

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6조제2항 단서 중 "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"를 "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"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"(금융정보등의 제공)"을 "(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)"으로 하고.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 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본문 중 "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를"을 "금융정보등을"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"를 "제21조의6 에 따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"로. "신용정보·보험정보를"을 "양육 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2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본문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본문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2항 및 제3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1항, 제2항 및 제4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및 제5항"으로. "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"을 "금융정보등의 동의. 제공 요청"으로 한다.

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

용정보·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.

- 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- 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- 3.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
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"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"을 "「가사소송법」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"으로 한다.

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4제1항 중 "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"을 "「가사소송법」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"으로 한다.

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의5제1항 본문 중"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"을

"「가사소송법」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3개월"을 "10일"로 한다.

제3장의2(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1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

- 제21조의6(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)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(이하 "양육비 선지 급"이라 한다)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  - 1.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- 2.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경우
  -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 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.
  -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선지급을 받고 있 거나 받도록 결정된 자(이하 "선지급 대상자"라 한다)가 양육비 선 지급의 사유가 변경 또는 상실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

거절하거나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- ④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, 선지급의 대상, 금액, 지급기간,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경우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.
- ⑤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를 압류할 수 없다.
- 제21조의7(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·질문 등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(이하 "선지급 신청인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·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육비 이행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,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등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·조사·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  -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·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 록전산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, 법원

행정처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·단체·법인 및 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·단체·법인 및 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제21조의8(양육비 선지급의 중지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,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  -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1조의6제3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,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선지급 대상자에게 알려야한다.
  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의9 (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

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 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- 제21조의10(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 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 야 한다. 다만,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반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
  -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 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,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의11(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양육비 채무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, 양육비 채 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

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③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1항의 고지 및 제2항의 통지는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
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여성가족 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,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.
- 1. 제10조, 제10조의2, 제11조, 제21조의6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
- 2.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
- 3.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
- 4.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

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

- 6.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
- 7.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

로 정하는 사항

8.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27조제1항 중 "제17조제5항"을 "제17조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"「가사소송법」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"을 "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"으로, "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"를 "이행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

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3 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 터 적용한다.

제4조(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벌칙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행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.

#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아 정 제6조(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) ① 제6조(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• 의 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5.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 지급에 관한 사항 5. (생략)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생 략)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(양육비이행관리원) ① ~ 제7조(양육비이행관리원) ① ~ ⑤ (생 략) ⑤ (현행과 같음)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.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 지급 5. ~ 10. (생략) 5. ~ 10. (현행과 같음) 제13조(비양육부 · 모 또는 양육 | 제13조(비양육부 · 모 또는 양육 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요청 등) ① ------

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 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게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·초본의 교부를 요청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비양육부·모 또는 양 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을 요청할 수 있다.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략)

- 1.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
- 2.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 족관계등록전산정보
-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양육 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
- ② (현행과 같음)

- 제14조(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) <삭 제>
  -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 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 적 양육비 긴급지원(이하 "긴 급지원"이라 한다)을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 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 원을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「국 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「긴 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 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 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 지 아니하여야 하고, 자녀의 복

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 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- ④ 긴급지원의 대상, 금액,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 경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.
-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,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제14조의2(긴급지원 종료 등) ①
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
  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
 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
  한다.
  -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 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

<삭 제>

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의3(긴급지원 결정에 관한이의신청 특례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 결정에 관한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이내에통지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
제14조의4(비용환수) ① 이행관리 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

<삭 제>

<삭 제>

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육비의 반환 기간,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에 관한 조사) ① (생 략)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, 건강보험·국민연금,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 략)

4	1103	도(왕五	ī P	개 -	누사	의	새	간	0
	에	관한	조시	<b>\</b> })	1	(현	행:	과	같
	음)								
	2								
				- ;	제21	조의	યે 6	케	따
		양육비		_					
								_ <u>'</u> _ 	
		~ (5)		해 j	나 구	} 음·	)		

제17조(금융정보등의 제공)

<신 설>

- 제17조(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 보등의 제공)
  -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 하여 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 라 한다)에 대한 조사가 필요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 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 한다는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 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.
  - 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  - 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
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 하여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 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 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 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 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「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 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・신 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를 제공

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
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
<u>정보</u>
<u>②</u>
금융정보등을
<u>ㅁ ㅇ ㅇㅗ ㅇ ㄹ</u>

3 「보헌엇번」 제4주제1한 각

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·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도불구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
   제1항
   및
   제2항
   에
   따른
   금

   융정보등의
   제공
   요청
   및
   제공

<u>제21</u>
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선지급
된 경우
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
<u>③</u> 제2항
,
<u>④</u> 제3항
 ⑤ 제2항 및 제3항

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제1항,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이로 정한다.

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제21조의3(운전면허 정지처분 요 청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 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

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
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
<u>5항금융정보등의 동의,</u>
제공 요청
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1121조의3(운전면허 정지처분 요
청) ①
「가사소송법」제63조의3제4항

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•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(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 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 의 운전면허(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 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효 력을 정지시킬 것(이하 이 조에 서 "운전면허 정지처분"이라 한 다)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양 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 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

② ~ ④ (생 략)

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
<u> 따른</u>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

제21조의4(출국금지 요청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<u>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</u>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법무부장관에게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 략)

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제21조의5(명단 공개) ① 여성가 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<u>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</u>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

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
제21조의4(출국금지 요청 등) ①
<u>「가사소</u>
송법」제63조의3제4항에 따른
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
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
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5(명단 공개) ①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5(명단 공개) ①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5(명단 공개) ① 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5(명단 공개) ① <u>「가사소송법」</u>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5(명단 공개) ① <u>「가사소송법」</u>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

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다 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양육비 채무자의 사 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 육비 채무자에게 <u>3개월</u>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 어야 한다.
- ③ · ④ (생 략) <신 설> <신 설>

-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_	_	_	_	_	_	_	_	_	-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•				
2			_						_	_	_					_	_					_	_	_
					_	_	_	_					- <u>1</u>	.0	Ç	<u>_</u>					_	_	_	_
					_	_		_							_	_						_	_	_

-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
- 제21조의6(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)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지급(이하 "양육비 선지급"이라한다)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있다.
  - 1.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

- <u>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</u> <u>아니한 경우</u>
- 2.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등을 신청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 급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을 결정할 수 있다.
-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선지급을 받 고 있거나 받도록 결정된 자 (이하 "선지급 대상자"라 한다) 가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변 경 또는 상실된 경우에는 양육 비 선지급 신청을 거절하거나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 는 변경할 수 있다.
- ④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, 선지급의 대상, 금액, 지급 기간, 지급 방법 등에 필 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

다.

⑤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를 압류할 수 없다.

제21조의7(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·질문 등) ① 이행관리원 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(이하 "선지급 신청인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·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육비 이행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등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·조사·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-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

<u><신</u>설>

따라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·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·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대통령이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관계 중앙행정기관, 법원행정처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관련 기관·단체·법인 및 시설등에 협조를 요청할수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·단체·법인 및시설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1조의8(양육비 선지급의 중지)
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
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
하는 때에는 양육비 선지급을
중지하여야 한다.

②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,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

<u>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</u> 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 야 한다.

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1조의6제3항에 따라 양 육비 선지급이 중지,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선지급 대상 자에게 알려야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알 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9(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 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 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 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 만,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 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 정기본법 시36조에 따른다. 제21조의10(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 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 다. 다만, 양육비의 반환이 미 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 나 반환 금액을 감경할 수 있 다.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

-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,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차 및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11(양육비\_ 선지급금의 회수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 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고지하 여야 한다.

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,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 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③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1 항의 고지 및 제2항의 통지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른다.

제23조(수수료) ① ~ ② (생 략) |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

-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받 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여 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,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. 1. 제10조, 제10조의2, 제11조,

제24조(업무의 위탁) ① 여성가족 제24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-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 탁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 <신 설>

4. • 5. (생략) <신 설>

<신 설>

제21조의6의 지원 신청에 필 요한 서류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

- 2.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 · 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
- 3.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 자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 사 항
- 4.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 등 의 제공에 관한 사항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의 파기
- 4. 5. (현행과 같음)
- 6.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.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

- ② (생략)
- 제27조(벌칙) ① <u>제17조제5항</u>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·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(생략)
  - 2. 「가사소송법」 제6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 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<신 설>

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8.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
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사항
② (현행과 같음)
제27조(벌칙) ① <u>제17조제6항</u>
② (현행과 같음)
1. (현행과 같음)
2. 「가사소송법」 제64조제1항
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
이행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
월 이내

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

 방법으로
 양육비
 선지급을
 받

 거나
 타인으로
 하여금
 양육비

 선지급을
 받게
 한
 자는
 1년
 이

 하의
 징역,
 1천만원
 이하의
 벌

 금,
 구류
 또는
 과료에
 처한다.